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6. 4. 22.(금) 09:30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6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보고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4월 12일에 있었던 제20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보고사항

가. (주)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주)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방송법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하여 보고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 말씀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오늘 보고안건으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난 다음에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심사계획 의결을 저희가 정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이전 단계에서 지금 이렇게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우선 마련했다는 것을 오늘 보고하는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계속 보고해 주시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경과사항입니다. '15년 12월 3일 미래부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사업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2일 유료방송사업 허가·재허가 및 변경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신청내용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주)씨제이헬로비전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주)와 법인 합병을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6개 심사사항, 9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사사항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4개 심사항목 그리고 나머지 심사사항에 대해서 각각 1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는 인사로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심사위원으로 총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절차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정하되 관련단체, 분야별 심사위원 인원 수 등 심사위원 구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위원회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내용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심사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 그리고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및 기타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심사계획에 규정되지 않는 심사 관련 세부사항 등을 결정하는 것, 또한 필요시에 신청법인 등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사전동의 조건 등 정책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결과는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하여 채택하되,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향후일정은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심사기준 및 주요 쟁점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하고, 미래부에서 사전동의를 요청한 이후에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우선 장내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카메라는 다 나가주십시오. 원래 저희가 약속드린 것은 자료화면을 위해서 처음에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잠깐만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점 촬영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이 인수합병의 주체가 SK브로드밴드입니까, CJ헬로비전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지금 합병의 주체는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주식 인수 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식 인수는 SKT가 CJ헬로비전의 주식을 인수한 것입니다. 저희는 주식 인수 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 시민사회의 지금까지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이 합병법인의 주인이 되느냐 주체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본이 SK브로드밴드에서 CJ오쇼핑으로 건너가서 그 오쇼핑의 대주주가 된다, 그리고 그 오쇼핑이 CJ헬로비전 이 인수합병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체가 CJ헬로비전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CJ헬로비전의 주식을 CJ오쇼핑이 보유하고 있던 것을 SKT에서 CJ오쇼핑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이후 후속절차로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이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SKT가 인수합병의 주체이다, 결국 이 합병 법인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최다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SKT이기 때문에 SKT가 실질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합병의 형식적인 부분이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를 합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2페이지를 보시면 합병법인이 CJ오쇼핑으로 되어 있고, 피합병법인이 SK텔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헬로비전….

○ 김재홍 부위원장

- 피합병법인이 SK텔레콤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것은 최다출자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SK브로드밴드가 피합병법인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합병 주체는 CJ오쇼핑으로 되어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전동의 심사를 할 때 심사자료를 수집하고 요청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는 미래부에서 받은 자료를 우리에게 건네줄 텐데, 그러나 사전동의 요청이 오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사전동의 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활동, 또 자료 요청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SKT, SK브로드밴드 쪽의 자료는 우리가 요청합니까? 수집합니까, 수집하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신청법인 자체가 CJ헬로비전이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는 CJ헬로비전으로부터 저희가 받게 되고, 필요한 자료들도 CJ헬로비전을 통해 받게 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CJ헬로비전을 통해서?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직접 SK브로드밴드 쪽에는 자료 요청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우리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을 하는 취지 안에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자료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직접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받기보다는 미래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사전동의의 기본원칙과 합치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것은 부처 간 사전협의라면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부처 간 사전협의를 아닙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사전동의를 우리는 심사해야 하는데 그 심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우리가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수집하고 취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부가 건네주지 않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없이 심사를 해야 합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취지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변경허가 신청이 미래부로 접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통위가 미래부에 요청해서 이러한 서류를 추가로 더 받아달라고 미래부에 요구하고 미래부는 그에 따라서 해당 법인에게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건네주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직접 해당 법인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없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 만약에 방통위가 꼭 필요한 자료인데 미래부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 원칙적으로는 미래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사전동의 취지에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사전동의 요청은 미래부에서 하지만 요청받은 뒤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우리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독자적인 자료 수집과 요청과 취재도 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부가 건네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사하고, 건네주지 않으면 그 자료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에 의결안건을 마련할 때 합니까? 여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만 지금 써 놓았는데...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심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사전동의 요청이 온 후에 우리가 관련단체 등에서 외부전문가를 추천받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와 상임위원님들 중에서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후속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또 필요한 논의를 거쳐 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외 관심,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으로 치면 정말 3기 방통위 재임기간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 사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추후도 오차가 없는, 차질이 없는 그런 사전동의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기준을 보면 방송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 합병 심사의 핵심을 제대로 짚을 수 있느냐, 점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번 SKT의 CJ헬로비전 합병은 법적으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조금 갈릴 수 있지만 본질은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자 전국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역에 기반한 케이블TV사업자를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 활성화 측면도 당연히 봐야 하지만 합병으로 인해 약화될 수 있는 공공성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점검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제를 운영하는 것은 바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나열을 하기보다도 여기에서 주안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방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어떤 항목을 더 비중 있게 보겠다,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고 위원님 말씀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심사사항에 대해서 4개 심사항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둘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것이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결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냥 이렇게 나열하기보다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논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케이블TV 방송사업자는 지역매체로서 여전히 역할이 필요하다는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할 경우 과연 지역성이 유지·강화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약화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O들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덩치가 커졌는데, 그러면서 정작 SO 본연의 지역성 구현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동통신 1위 사업자

가 지역 권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SO를 합병했을 때 과연 지역성이 유지 내지는 강화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심사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성 구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제시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이용자의 권익보호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즉, 지역민의 권익보호, 지역공동체 유지·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본다면 당연히 이용자, 시청자들의 권익이 저하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 방송·통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 합병으로 인해 거대한 플랫폼사업자가 등장한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콘텐츠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사항으로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 지역성의 유지 강화, 이용자의 권익증대 그리고 거대 플랫폼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의 공정경쟁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심사위원들께서 잘 심사해 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제 입장을 내겠지만 우선 제가 관심 있는 것은 그것 세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기준과 관련해서 보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에 보면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면 그동안 법 준수 여부와 앞으로 공익성 실현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법 준수 여부 이것이 결국 최대주주나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근거자료가 될 텐데, 여기에 보면 적법성과 관련해서 방송법, IPTV법 등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합병법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가 방송법과 IPTV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것이 있습니까? 최대주주는 지분 소유제한을 위반하지 않으면 방송법이나 IPTV법을 위반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실효성 있는 기준이냐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여기에서 최대주주라고 하면 법인을 상정한 것이고, SK텔레콤이 될 것입니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회사로 SK브로드밴드를 두고 있고 IPTV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IPTV법 관련 부분도 같이 보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변경허가 사전동의가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변경허가 사전동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방송 부문에 의해서 방송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겠다고는 취지였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법인에서의 최대주주의 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은 심사할 때 점검하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액출자자 변경승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부의 권한사항이고, 우리가 최대액출자자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만 사전동의를 하는데, 다만 최대주주의 이런 공적책임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일정에서 보면 사전동의 심사기준(안) 및 주요 쟁점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통신사,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의 간담회는 언제 합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계획은 어차피 사전동의 요청이 오고 난 이후에 심사계획을 의결할 것이고, 그 이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부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번 심사, 물론 다른 기관들과 경쟁하거나 다른 기관의 역할, 권한을 제가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합병 심사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미래부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래부는 산업의 활성화를 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을 봐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심사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다른 중요한 이슈들은 논외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보정기간은 보장 받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심사항목들을 3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제대로 다 살펴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은 공정위나 미래부가 심사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핵심으로 보는 것이고, 미래부는 아무래도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은 우리 위원회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과연 35일이라는 기간 동안 다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느냐, 그것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공적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시청자단체 및 시청자들 의견을 최대한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심사 기본계획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신 과장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청자·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간담회는 사전동의 요청이 오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개최할 예정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기준에 따라서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을 찾아내기도 하고, 각각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들이 어떠한 것인지, 물론 그 이전에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심사사항과 심사항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때 이 항목별로 채점을 매기게 됩니까, 점수 배당이 있는 것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배점 방식은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제가 보고드린 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심사위원간 토론을 거쳐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방통위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제는 아닙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배점을 통한 채점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 중에 예를 들어 우리 언론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데, 그렇다면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합병에 대한 찬반 형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방식은 배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쪽 의견만 진술해서 정리하는데 불과한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 부분은 다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심사위원님들이 동일한 의견을 낸다면 한 가지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심사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신다면 그 다양한 의견을 내신 대로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회에 보고드릴 생각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가 다양한 의견이 진술될 수도 있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찬반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우리가 가늠할 수 없겠네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 심사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도 채점제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형태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하 되, 그쪽에서는 아마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찬반 결론을 내는 것으로...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미래부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채점방식이 아닌 방식을 우리가 택했는데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일반적으로 변경허가나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이전에도 그런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나 재허가는 배점제로 하는 방식이 더 적절한데, 변경허가는 논점들이 다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몇 점 이상이니까 해 주고, 몇 점이 안 되니까 안 해 주고 이런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주로 배점제를 취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결과를 내는 식으로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 재승인, 재허가는 채점방식이지만, 합병 건은 채점 방식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병 건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하게 아주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의견을 정말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우리가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견수렴을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어떻게 수렴해야 할지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계는 지상파방송, 또 종편도 있을 것이고, 케이블방송도 있을 것이고, 방송 외에도 학계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집단이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의견수렴 절차를 밝게 되는지, 그 대상을 잠깐 러프하게라도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들은 미래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사들이나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심사를 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또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점방식이나 심사방식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찬반,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을 내는 쪽이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예측을 짚어내고 다양하게 의견을 정리해 보는 심사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심사위원이 누가 되는지, 또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는지 간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면 심사위원장은 의견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여서 캐스팅보트(Casting vote)를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방식이라면 언론에서 또 각계 이해집단 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지나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사무처 판단도 그렇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만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형평성이나 방송의 공적책임을 충분히 배려하고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 합병 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견을 명시하시는 분들 그런 학자라든가 그런 전문가는 당연히 제척사유가 되어서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모시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작업들을 병행하고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실무적으로 준비할 때 어차피 풀(Pool)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사위원단에 포함시킬 분들의 명단을 놓고 볼 때 과거의 발언이나 또 칼럼이나 방송에 출연해서 의견개진했을 때 어떤 성향이었던 것을 수고스럽지만 조사를 잘해서 그런 분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가장

공평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각 이해집단들이 여기에 이해가 충분한 사람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토론회나 또는 언론보도나 방송 등에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다 해 놓고 있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각 심사항목, 총평에 대해서 위원별 의견이 일치가 되면 일치되는 의견을, 또는 의견이 나뉘면 각 위원별로 나뉘는 의견대로 정리해서 일단 결론을 반드시 내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기보다는 서술형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서술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면 결론을 기재해도 관계없다, 그런 입장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별 의견이 없었는데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토론 과정에서 저도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심사사항이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일곱 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사사항에 심사항목이나 주요 심사내용은 저희가 그간에 이와 같은 업무를 쫓 해 오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 나와 있는 제7호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일단 심사항목이나 주요 심사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추후 구성될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다른 심사항목이나 주요 심사내용도 변경할 수 있고, 제7호와 관련한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저는 우리 방통위에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몇 분의 위원님들이 세간의 관심이 많고, 언론의 관심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고려 안 한다고 하면 또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방송법 제10조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정한 심사사항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담회를 개최하든 의견수렴을 하든 다 좋은데, 의견수렴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지, 의견수렴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방통위가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차분하게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 데, 예를 들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사전동의 요청을 할 때 관련된 서류나 자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방통위가 요청할 자료, 자료 요청할 대상은 오로지 심사사항, 심사항목, 주요 심사내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그 자료를 요청할 대상은 거기에서 다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할 자료도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자료 같으면 미래부에 요청을 하지만 저희 심사사항을 심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을 법한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되고 그 관계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안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심사기준을 보면 심사사항 중 <1> 항목은 심사항목이 네 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다섯 가지는 심사사항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배점이라는 것이 있는 개념이 아니지만 심사항목이 네 가지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나름 중요하다, 그 심사사항을 통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 방송법에 정한 규정과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전문적으로 차분하게 진지하게 검토를 우리가 해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회의 처음에 사진 촬영시간이 보통 때보다 지나치게 길고, 홍보협력담당관실에서 출입기자 분들과 협조를 잘해서 언론의 관심이 많다, 세간에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도 당연히 그러실 것이고, 사무처에서도 이것은 진중하게 차분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을 할 때 미래창조과학부가 합병 신청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출받았던 서류를 다 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업무처리 방식이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제출받은 서류는 다 우리에게 보냈고, 거기에 플러스로 미래부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내 줬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최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래부가 심사할 때 자신들이 검토했던 자료는 전부 저희가 그대로 사전동의를 요청받을 때 넘겨받는다고 해도 되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추가로 더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변경 사전동의 심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가 모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일단 이 정도의 내용으로 지금 계획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심사기준 등에 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때에는 심사계획(안)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의결할 때 논의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 제가 심사의 주안점이나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자,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자고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 하면 이번 합병 건은 기존에 그냥 단순한 합병 건이 아닙니다. 즉, 이 합병심사에 대한 결론이 앞으로 방송과 통신 시장전체의 구조 변화까지 촉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요한 사안들을 다 우리 위원회가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물론 사전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이 기껏해야 일주일 이내입니다. 그 심사결과가 나오면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사전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전체회의를 한다거나 몇 번 정도 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심사기간과 상임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칫 이 큰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글썄요. 보기 나름이겠습시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동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저희들이 통상 35일 기간 동안 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위원회 위원님들,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각자께서 이 합병변경 허가 심사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검토하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원들이 따로 모여서 한 두 번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 요청이 오기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전동의 요청이 오는 순간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의견수렴할 것은 의견수렴하고, 또 저희 위원들께서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비록 공식적인 서류는 오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심사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합쳐져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접수하겠습니다.

7.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4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8.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0분 폐회 】